

#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예정 직무
수상 안전관리	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	16명	2년 (주당 35시간)	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	- 한강버스 운항구간 내 충돌 방지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- 한강 수상레저활동 상시 계도 및 현장 단속(합동점검 포함) - 수상시설물 수사정기 안전점검 (합동점검 포함)단속 - 수상안전시설물(항로표지, 수상안내부표, 잠수교 통항표시기 등)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- 수상행사, 수상통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- 단속 상황실(CCTV) 및 단속반 운영 등 행정업무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## 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

## 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

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**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**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분	응시자격요건
수상안전관리 요원 (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)	1.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<b>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</b> ▶ 5급 해기사 이상 면허 취득 후 공공 및 민간기관 영역에서 해기사로서 승선경력 ▶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양관광·레저(마리나) 사업체에서 운항업무 수행경력 ▶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내수면·해양 분야에서 단속·계도 실무경력

※ '경력'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 
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5항)

## 4.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 
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 
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 관련)]

(단위: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8급(상당)	62,096	44,296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 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-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
- 하한액 44,296천원 \* 35/40시간 = **38,759천원**

- 주당 근무시간 : **주 35시간 근무 약정**

- 1일 7시간 주 5일 근무, 토·일요일은 필수근무, 주·야간 교대근무, 휴일 및  
심야시간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부서의  
근무편성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(탄력적 운영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4. 22.(수) ~ 4. 27.(월), (09:00~18:00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 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 - 주 소 : 우편번호(04770)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인사담당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# 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4. 30.(목)	
면접시험	2026. 5. 06.(수)~07(목)	면접 인원에 따라 변동가능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5. 08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※ <u>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</u>	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#### 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 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미래한강본부에서 별도 설정·시행

#### 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#### 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

결격 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직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6개월 이내**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가산특전

### 가. 가산특전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

대 상	가산비율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
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

### 나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시험점수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(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제외)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-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’ 발급받아 제출(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(지)청 방문, FAX 등으로 발급 가능)

### 다.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3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-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-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

## 7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#### 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(8급 상당 5,000원)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(영수증, 매출전표) 또는 첨부(납부확인서)
  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**납부확인서**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.(판매장소: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-2133-7908)
  - ※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취급하나,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구매하여야 함.
  - ☞ 자치구 수입증지(매출전표)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
  - ※ 온라인 구입은 ETAX홈(etax.seoul.go.kr)에서 절차(신고납부 → 서울시 채용 수수료)에 따라 하면 됨.
  - ※ 원서접수처(미래한강본부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
  - ※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.

#### ◆ 수입증지 구입 안내 ◆

##### 1. 직접 방문 발급

- 직접방문: 서울시 열린민원실(신청사1층)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(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)
  - ▶ 서울시청 열린민원실: 현금 또는 신용카드(체크카드 가능)
    - \*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(방문시 필히 지참)
    - \*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(카드사용/가맹점용), 부착
  - ▶ 구청 재무과: 카드만 사용 가능

##### 2.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(ETAX) 발급: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「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」 메뉴에서 구매 가능

- ▶ 성명, 주민번호, 금액(5천원, 7천원, 1만원, 중 선택) 입력 후 결제 구매(회원, 비회원 모두 가능)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> 신고납부 >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]

- ▶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,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홈 > 납부(영수증)확인 > 신고납부확인  
납세번호 클릭 > 하단 납부확인서 인쇄]

#### 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**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**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5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6) 1부
-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- 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**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, 주 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**
 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[첨부8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  - ※ 증명서 상 직무분야 해당 경력, 근무기간 등 증빙이 안될 경우 경력인정 불가
- 소형선박조종면허, 6급 해기사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증빙자료 1부

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  
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
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\* ①, ②모두 제출  
\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  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
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**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)**  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
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즉시발급 증명 → 소득금액증명 → **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**  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· 관련 문의 : 국세청 (☎126)

#### 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 8) 1부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 등)
- 가산특전 증빙서류 1부(가산특전에 해당될 경우)

## 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인사담당 (☎ 02-3780-0717)

▶ 직무내용 관련 문의

연번	임용분야	담당부서	연락처
1	수상안전관리	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	02-3780-0826

※ 제출 서류의 첨부 서식은 “응시자 제출서식” 참조

# 직무기술서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수상안전관리	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	16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	수상안전과

<b>주요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강버스 운항구간 내 충돌 방지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계도·단속</li> <li>- 한강 수상레저활동 상시 계도 및 현장단속(합동점검 포함)</li> <li>- 수상시설물 수시·정기 안전점검(합동점검 포함)·단속</li> <li>- 수상안전시설물(항로표지, 수상안내부표, 잠수교 통항표시기 등)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</li> <li>- 수상행사, 수상통제 등에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계도·단속</li> <li>- 단속 상황실(CCTV) 및 단속반 운영 등 행정업무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 마인드(공복의식)</li> <li>·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 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</li> <li>· (직렬별 역량) 신의·성실성,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 등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내수면 수상단속 및 고속행정순찰선 운항과 정비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</li> <li>· 해양수산 분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 또는 내수면·해양 법규위반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임용분야 : 수상안전관리</b>	
<b>응시자격요건</b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5급 해기사 이상 면허 취득 후 공공 및 민간기관 영역에서 해기사로서 승선경력</li> <li>▶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양관광·레저(마리나) 사업체에서 운항업무 수행경력</li> <li>▶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내수면·해양 분야에서 단속·계도 실무경력</li> </ul>